

## 3. 23.&gt;

1. 이전계약서 사본
2. 이전가격의 명세서

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당해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자의 점용허가기간은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자가 받은 점용허가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6조(원상회복의무)**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점용허가받은 철도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점용허가를 받은자가 그 점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점용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허가기간의 만료일 또는 점용폐지일 3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은자의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직권으로 철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부분을 명시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점용허가기간의 만료일 또는 점용 폐지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5조에 따른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4조에 따른 전용철도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36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에 관한 사무
7. 법 제40조에 따른 전용철도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4. 20.]

**제16조의3** 삭제 [<2018. 12. 24.>](#)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6. 6. 28.]

**부칙** <제33913호, 2023. 12. 12.>(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